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0가단51869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규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11. 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2019. 11. 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92,837,6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주식회사에게 위 가.항 기재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92,837,699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사이에 2019. 11. 8. 체결된, 피고 C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92,837,708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92,837,708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피고 C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92,837,708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 3. 31.경까지 모두 퇴직한 상태였다.

나. 대한민국은 2016. 11. 24. E에 대한 국세(부가가치세) 환급금 678,744,960원에 대하여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2016. 11. 24. 위 환급금 상당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4218호로 공탁(이하 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F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E은 2017. 9.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배당법원은 2017. 12. 20. 이 사건 공탁금을 우선순위에 있는 채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135,875,219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E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압류 등 경합을 이유로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다시 개시되었다.

마. 배당법원은 2018. 8.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 등을 비롯한 E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자들(이하 '급여채권자들'이라 한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15437)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30. ①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급여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인 146,781,4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고 G만 이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G에 대한 배당액을 위 원고가 구하는 43,071,931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5,909,639원은 92,837,70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사. 피고 C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9. 11. 8. 피고 B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된 배당금 92,837,708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자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 원고 등이 늦어도 2016. 3. 31.경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92,837,699원 상당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을 갖고 있던 사실, E은 2017. 9. 25.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2억 원을 양도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등의 채권액인 146,781,45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된 사실, 다만 원고 등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아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의 배당표 경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은 피고 C를 상대로 별지 기재 금액란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등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
-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E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E이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9053 판결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1)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참조).
- 2) 갑 제1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안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피고 C가 소유한 부동산은 전혀 없는 사실, 피고 C는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이유로 2018. 12. 31.자로 직권폐업된 사실, 반면 피고

C는 2017년 내지 2018년경 151,043,032원 상당의 임금 또는 퇴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53,902,500원 상당의 체당금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B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배당금지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배당절차 이외에도 다른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 등은 위와 같은 다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상당액을 배당받아 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H 배당절차, I 배당절차가 각 개시된 사실, 위 각 배당절차의 채무자는 모두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등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배당절차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C의 위 주장을 선행하여 E이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H 배당절차의 채권자는 102명임에 반하여 배당할 금액은 38,146,790원에 불과하고, 위 I의 채권자는 103명임에 반하여 배당할 금액은 91,109,190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E이 무자력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 등의 채권액 합계 92,837,69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배당금지급청구권 중 92,837,699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선정자명단

1. A
2. J
3. K
4.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끝.

별지

목 록

순번	이름	금액(원)
1	A	2,946,081
2	J	5,894,543
3	L	7,658,393
4	K	2,875,902
5	M	2,844,430
6	N	754,917
7	O	1,190,929
8	P	3,423,715
9	Q	1,341,073
10	R	1,163,311
11	S	1,550,893
12	T	6,260,454
13	U	17,899,949
14	V	4,627,961
15	W	27,912,049
16	X	4,493,099
합계		92,837,699

